

인천가정2 B2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 **당첨자서류 제출 기간에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하며, 당첨자서류 미제출시 계약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일정 및 당첨자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 **제출일자를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기간연장 없음)**
- 금번 안내문 외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게시되는 분양공고문과 사이버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공고일 이후 접속 가능하며, 인터넷 주소는 공고문에 기재 예정)
- **공급 문의 : ☎032-567-4564**(10:00~17:00, 점심시간 및 주말,공휴일 제외)
※ 단, 기관추천 대상자 선정 관련 문의는 각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및 일정

- **공급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청라동 일원 가정2지구 내 B2블록

블록	주택형	단위평형	전용면적	공급면적	건설호수	공급호수*	입주
B2	74	74A	74.95	98.6986	41	41	'28.7월 (예정)
	84A	84A	84.53	111.3141	187	165	
		84A1	84.99	111.9198			
		84A2	84.99	111.9198			
	84B	84B	84.59	111.3931	58	37	
		84B1	84.99	111.9198			
	84C	84C	84.98	111.9067	22	19	

* (공급호수) 민간사전청약 기공급 단지로 사전청약 당첨자 수 제외

- **공급일정** ※ 추후 변동 가능하오니, 반드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 분	일 자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6. 4. 15. (예정)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현장접수 불가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 04. 27. ~ 28 (예정)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분양조건**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공고일에 LH청약플러스 내 게시 예정) 참조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6.4 예정)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10년이상 복무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선수,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대한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 및 분양권 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주택의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미계약, 미신청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함)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됩니다.
(특별공급에 신청 미달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대상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3. 유의사항

- 해당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26.4월 공고 예정)상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 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25.12월 공고예정)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공고일 이후 팸플릿 및 사이버건본주택을 통하여 신청형별 세부사항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팸플릿 및 사이버건본주택 주소는 공고일 LH청약플러스에 게재 예정)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수도권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중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인 중복청약이나 세대원 중복청약으로 1세대 내 2건 이상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단, 예비대상자는 일반공급만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가정2 B2블록 위치도

※ 해당내용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평면도 등 단지정보는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팸플릿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